



제428회국회(임시회)
제1차보건복지위원회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수입 금지〉

■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10327호)

2025. 8.

보 건 복 지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이지민

목 차

I . 개요	1
II . 주요 내용별 검토	2
1.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수입 금지	2

I. 개요

1. 신영대의원 대표발의안(의안번호 제10327호)

가. 제안경위

- (1) 제 안 자 : 신영대의원 등 12인
- (2) 제 안 일 : 2025. 5. 1.
- (3) 회 부 일 : 2025. 5. 2.

나.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식품위생법」은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원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생원료에 대한 기준을 정하여 고시하고 허용되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음.

이에 반해 현행법은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기준을 정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소비자 안전에 문제가 발생할 우려를 안고 있음.

이에 소비자의 안전을 위하여 수입되고 있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재생원료에 대하여 「식품위생법」의 기준에 따른 인정을 받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등).

Ⅱ. 주요 내용별 검토

1.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수입 금지

가. 개정안의 내용

□ 개정안은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의 기준이 「식품위생법」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도록 하고,

누구든지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며,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3 및 제10조의4 신설, 안 제42조).

현행	개정안
<신설>	제10조의3(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포장에 관한 인정) ① 재생원료(이미 사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원료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포

현행	개정안
	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의 기준이 「식품위생법」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정을 신청한 자에게 안전성 확인 등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④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제1항에 따라 인정을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4항에 따른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

현행	개정안
<u><신 설></u> 제42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u><신 설></u> 1. ~ 3. (생략)	<u>정한 사항 외에 인정 절차, 인정서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u> <u>제10조의4(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수입 금지) 누구든지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여서는 아니 된다.</u> 제42조(벌칙) ----- ----- ----- -----. 1. <u>제10조의4를 위반하여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한 자</u> 2. ~ 4. (현행 제1호부터 제3호까지와 같음)

* 시행일: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

나. 검토의견

- 「식품위생법」 제9조의2제1항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원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생원료(이미 사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원료물질을 말함. 이하 같음)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¹⁾하도록 하고, 같은 조 제2항에서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를 제조하려는 자는 해당 재생원료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도록 하되, 가열·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정제·중합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정을 거친 재생원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도록 규정하고 있음.²⁾
- 또한, 같은 법 제9조의3에서는 누구든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1) [참고] 기구 및 용기·포장의 기준 및 규격[식약처고시 제2024-29호, 2024.6.21., 일부개정](일부발췌)

2) 「식품위생법」

- 제9조의2(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 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기구 및 용기·포장을 제조할 때 원재료로 사용하기에 적합한 재생원료(이미 사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다시 사용할 수 있도록 처리한 원료물질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기준을 정하여 고시한다.
- ②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를 제조하려는 자는 해당 재생원료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아야 한다. 다만, 가열·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정제·중합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정을 거친 재생원료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 ③ 제2항에 따라 인정을 받으려는 자는 총리령으로 정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신청하여야 한다.
- ④ 제3항에 따라 신청을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인정을 신청한 자에게 재생원료의 안전성 확인 등 인정에 필요한 자료를 제출하게 할 수 있다.
- ⑤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제3항에 따라 인정을 신청한 재생원료가 제1항에 따른 기준에 적합하면 제2항에 따라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하고,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인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 ⑥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제5항에 따른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을 받은 자에 대하여 그 인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재생원료의 인정 절차, 인정서 발급 절차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총리령으로 정한다.

사용하여서는 아니 되도록 하고, 이를 위반한 자에 대해서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³⁾

□ 개정안은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는 해당 기구 및 용기·포장의 제조에 사용되는 재생원료의 기준이 「식품위생법」 제9조의2에 따른 기준에 적합한지에 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의 인정을 받도록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 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안전을 보다 두텁게 보장하려는 취지로 이해됨.

□ 다만, 개정안과 관련하여서는 다음과 같은 점을 고려하여 신중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첫째,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조4)에서는 수입식품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률에 따르도록 하고 있고,

「식품위생법」 제9조의2에서는 기구 및 용기·포장의 원재료로 사용할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같은 법 제9조의3에서는 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를 규정하고 있음.

3) 제9조의3(인정받지 않은 재생원료의 기구 및 용기·포장에의 사용 등 금지) 누구든지 제9조의2제2항에 따른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하거나 판매할 목적으로 제조·수입·저장·운반·진열하거나 영업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95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거나 이를 병과할 수 있다.

1. 제7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9조제4항(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제9조의3(제88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한 자

4)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① 이 법은 수입식품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보다 우선하여 적용한다.

② 수입식품등과 관련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식품위생법」, 「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축산물 위생관리법」, 「식품·의약품분야 시험·검사 등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률에 따른다.

□ 따라서, 현행법 체계상 「식품위생법」에 따른 재생원료에 관한 인정은 ‘국내 재생원료 제조업자’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 수출을 원하는 ‘해외 재생원료 제조업자’에게도 적용될 것으로 보이고,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재생원료를 사용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판매할 목적으로 수입하거나 영업에 사용하는 경우 「식품위생법」 제95조에 따라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게 되는바,

개정안과 같이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지 않더라도 식약처장의 인정을 받지 아니한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포장의 수입은 이미 금지되고 있음.⁵⁾

□ **둘째**, 「식품위생법」 제9조의2제2항에서는 재생원료 제조업자에게 인정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 데 반해, 안 제10조의3제1항에서는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인정받을 의무를 부과하고 있는데,

「식품위생법」에 따라 해외 재생원료 제조업자가 받아야 하는 인정과 안 제10조의3제1항에 따라 해당 재생원료를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포장을 수입하려는 자가 받아야 하는 인정이 사실상 ‘동일한 재생원료’에 대한 인정으로 중복 규제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5) 참고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따르면, 「식품위생법」 제9조의2가 신설되어 시행('22.12.11.)된 이후 현재까지 해외 재생원료 제조업자가 제조한 재생원료에 대하여 식품의약품안전처장으로부터 인정받은 것은 없으므로, 같은 조 제2항 단서에 따라 가열·화학반응 등에 의해 분해·정제·중합하는 등 총리령으로 정하는 공정을 거친 재생원료를 원재료로 사용하여 제조한 기구 및 용기·포장만 수입이 가능함.

다. 관계 기관 및 단체 등 의견

□ 식품의약품안전처:

-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은 수입식품 안전성 관리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제도적 장치를 규정한 특별법으로서 이 법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식품위생법」 등 관계 법률을 따르도록 하고 있고,

현행 「식품위생법」에서 기구 및 용기·포장에 사용하는 재생원료에 대한 기준 마련 및 인정 근거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며, 인정받지 아니한 경우 판매 또는 수입 금지토록 규정하고 있음. 따라서, 현행 법률 체계상 「식품위생법」을 수입 기구 등에도 적용 가능하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에서 별도 규정하는 것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 법 제처:

- 현행 「식품위생법」에서도 재생원료 인정 및 미인정 재생원료 사용 기구 등의 판매·수입 금지 규정이 존재하므로, 「수입식품안전관리 특별법」의 신설 규정과 「식품위생법」 규정 간의 중복 여부 및 법률 집행상의 혼란 발생 가능성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문 의 처

02)6788-5493

【참고】	기구 및 용기 · 포장의 기준 및 규격 [식약처고시 제2024-29호, 2024.6.21., 일부개정](일부 발취)
------	--

II. 공통기준 및 규격

나. 제조 · 가공 기준

2) 합성수지 재생원료 기준

가) 기구 및 용기 · 포장 제조 · 가공 시 식품과 직접 접촉하지 않는 부분에는 재생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유해물질이 이행되어 식품에 혼입될 우려가 없도록 제조되어야 한다.

나) 기구 및 용기 · 포장 제조 · 가공 시 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부분에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재생 합성수지를 사용할 수 있다.

(1) 가열 · 화학반응 등에 의해 원료물질 등으로 분해하고 정제한 후, 이를 다시 중합(화학적 재생, chemical recycling)한 경우

(2) 물리적으로 재생된 폴리에틸렌테레프탈레이트(PET) 재질의 재생 합성수지로서, [별표4] 기구 및 용기 · 포장에 사용되는 물리적 재생 합성수지제 기준에 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경우 재생 공정 중 사용하는 원료(플레이크 등)는 「식품용기 사용 재생 원료 기준」(환경부 고시)에 적합한 것이어야 함

다) 재생원료의 인정을 신청하는 경우 제출하여야 하는 자료는 「식품 위생법 시행규칙」 제6조제2항에 따라 [별표5]와 같다.